의안번호	제671호
의 결 연 월 일	2014년 6월 일 (제330회)

충청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형근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4년 6월 2일

충청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1

발의연월일 : 2014년 6월 2일

발 의 자 : 김형근, 김희수, 심기보
김봉회, 임 현, 김영주
최미애

1. 제정이유

충청북도 경관 조성시 성별 수요조사를 통해 성별 특성, 성별 편익 차이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출시 성별 수혜자 수요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 제4조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경관법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와 협의하였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생략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성별 수혜자 수요조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북도 경관 조례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제4조(경관사업 계획서) 생략	**제4조(경관사업 계획서)**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성별 수혜자 수요조사

관계법령 발췌

☐ 경관법시행령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